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내무위원회

1993. 8. 6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제출일자 : 1993년 7월 30일

· 회부일자 : 1993년 7월 30일

다. 상정일자 : 제93회 임시회

· 제1차 내무위원회 (1993. 8. 6)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2. 제안성명 요지

(제안설명자 : 내무국장 조 영 창)

가. 제안이유

내무부로부터 시·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마을회" 위탁관리 범위에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 이용 시설"을 추가 (제5조 제1항)
-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와 관련 지방재정법시행령과 상충된 조문일치(제22조)
- 공유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을 층별 세분 및 현행보다 하향조정 등 (제25조 제2호)
- 공유재산 대부료 납부기한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하여 30일 연장 (제26조)
-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의 수의계약 매각 가능 면적범위를 시지역은 300㎡이내 (군지역 400㎡)에서 1,000㎡(군지역 2,000㎡)이하까지로 확대하고, 사유건물 점유 공유토지에 대하여 사유건물 소유자에게 건물바닥면적 2배 이내 까지 분할매각이 가능토록 조정 등 (제39조의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윤 태 무)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시·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준칙과 관련하여 자치단체 내의 공유재산 처분·관리에 있어서 대부료 산출 기준, 납부기한 등이 상이하여 이를 조정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계약보증금을 현재 대금 완납시 반환하고 있어서 이를 매각 대금 납부로 간주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첨부서류를 생략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며 매매, 대부, 교환시 조례내용과 서식내용이 상충하여 이를 조정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마을회관등의 위탁관리 범위를 확대하여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 공동 이용시설" 조문의 추가,

둘째,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와 관련 지방 재정법 시행령과 상충된 조문의 일치

셋째, 공유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을 층별 세분 및 현행보다 하향조정,

넷째, 공유재산 대부료 납부기한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하여 30일 기한 연장

다섯째,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의 수의계약 매각가능 면적범위를 시지역은 300㎡이내 (군지역 400㎡)에서 1,000㎡(군지역 2,000㎡)이하까지로 확대하고 사유건물 점유 공유 토지에 대하여 사유건물 소유자에게 건물바닥면적 2배 이내 까지 분할 매각이 가능토록 조정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승인 하여 줄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5. 토 론 요 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 사 결 과 : 도 원안대로 의결 (참석 7인, 찬성 7인)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 신규조문 대비표